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국만기보험등 미가입 사용자 처벌 강화〉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1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출국만기보험등 미가입 사용자 처벌 강화	3

I. 제안경위

2025년 2월 25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 하여금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제대로 가입해 주지 않음에 따라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1호의2·제3호의2 신설 및 제30조).

Ⅲ. 검토의견

1. 출국만기보험등 미가입 사용자 처벌 강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출국만기보험등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u>
2. 3. (생략) <u><신설></u>	2.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u>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자신이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출국만기보험등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채권 등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이러한 처벌은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 수단이고, 해당 보험등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채불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수단에 해당하며, 만약 퇴직금이나 임금 채불이 발생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나¹⁾ 「근로기준법」 등²⁾ 다른 법으로 사용자를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4년 기준 출국만기보험 가입률 99.3%, 보증보험 가입률 98.6%으로 사용자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낮고, 현행 500만원 벌금 외에도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용자는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다는³⁾ 점을 고려하면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 상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문 의 처
02)6788-5545